

대구예술대학교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

(제정 2012.02.09. 법인이사회)

(개정 2012.08.08. 법인이사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명예총장의 추대절차와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명예총장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전임총장으로서 대학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고 향후에도 대학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세기학원 이사장이 추대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 (추대절차) 명예총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이사장이 추대한다.

제4조 (추대기간) 명예총장의 추대기간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
제5조 (역할) ① 명예총장은 법인 이사장과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.

② 명예총장은 이사장과 총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6조 (예우) ① 명예총장은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공무활동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명예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총장에 준하는 여비와 실경비 차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